

**2010. 9. 1. 승계안건**

의안번호	제 104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 
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0년 3 월 15일
승계연월일	2010년 9 월 1일

##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0. 3. 15.  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1. 제안이유

학원의 심야 교습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,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 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유치원생·초등학생·중학생은 밤 11시,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는 학원의 심야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여 통일시키고자 함(안 제4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발췌
- 나. 자체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- 다.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 : 원안통과

라. 입법예고('09.12.31~'10.1.20) 결과 제출된 의견 및 반영결과

- 1) 충청북도학원연합회 : 생존권 문제로 단축반대 ⇒ 반영 안함
- 2) 충청북도교원단체연합회 :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단축찬성
- 3) 대한민국교원조합충북지부 : 단축찬성(초등 21:00, 중등 22:00)
- 4) 전교조 충북지부 : 무응답

마. 기타

※ 교습시간 단축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

- 1) 설문기간 : '09. 10. 23 ~ 11. 5.
- 2) 설문대상 : 도내 초·중·고 학생 및 학부모, 교원, 운영위원 등 총 21,560명
- 3) 설문결과 : 전체평균 찬성 67.7% > 반대 32.3%
  - 학 생 : 찬성 62.4% > 반대 37.6%
  - 학부모 : 찬성 71.9% > 반대 28.1%
  - 교 원 : 찬성 81.1% > 반대 18.9%
  - 운영위원 : 찬성 81.8% > 반대 18.2%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22:00까지로 한다. 다만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 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)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23:00까지로 한다. 다만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는 24:00까지로 하며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</p> <p>② 삭제</p>	<p>제4조 (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)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:00부터 22:00까지로 한다. 다만, 독서실은 24시간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나 24:00부터 04:00까지는 출입을 금한다.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

제16조 (지도·감독 등)

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